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집중투표 관련 정관 변경시 의결권 제한 대상 확대>

■ 김현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658호)

2026. 7.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혜 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현정의원 등 14인
2. 제 안 일 : 2025. 7. 23.
3. 회 부 일 : 2025. 7. 2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규정하고 있으나, 집중투표제에 관해서는 정관에 의해 배제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있고 감사위원회위원 분리선출 대상 또한 1명으로 한정되어 있어, 이사회 구성에 대한 지배주주의 과도한 영향력을 축소시키고 소수 주주의 권리를 확대하고자 한 입법 취지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2025년 7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지만, 집중투표제 예외 조항 적용 금지와 감사위원회위원 분리선출 확대가 이뤄지지 않고서는 그 실효성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대규모 상장회사에 관하여 그 이사 선임과정에서 집중투표제를 정관으로 배제할 수 없도록 하고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회위원의 수도 확대하여, 회사의 의사결정과 경영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542조의7 및 제542조의12).

Ⅲ. 검토의견

□ 현행법(2026. 7. 기준)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회사가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하거나 그 배제된 정관을 변경하려는 주주총회 결의시, 발행주식총수 3%를 초과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의 경우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이른바 “3%룰”)하고, 정관으로 그 지분 비율(3%)을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제542조의7제3항)¹⁾

○ 집중투표란 2명 이상의 이사를 1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하는 경우, 주주에게 1주에 대하여 선임할 이사의 수에 해당하는 복수의 의결권을 주는 방식(제382조의2)²⁾으로, 주주들이 복수의 의결권을 특정 후보에게 집중적으로 행사할 수 있으므로 소수주주 측의 후보

1) 「상법」(2025. 9. 9. 법률 제2104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42조의7(집중투표에 관한 특례)
②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382조의2에 따라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상장회사가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하거나 그 배제된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정관에서 이보다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제3항에 따른 집중투표 배제에 관한 정관 변경에 관한 의안을 상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항의 정관 변경에 관한 의안과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상법 시행령」 제33조(집중투표에 관한 특례의 대상 회사) 법 제542조의7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를 말한다.

2) 「상법」 제382조의2(집중투표) ① 2인 이상의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총회의 소집이 있는 때에는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에 대하여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이사의 선임결의에 관하여 각 주주는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가지며, 그 의결권은 이사 후보자 1인 또는 수인에게 집중하여 투표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투표의 최다수를 얻은 자부터 순차적으로 이사에 선임되는 것으로 한다.

도 이사로 선임될 가능성이 있도록 하는 제도로³⁾ 1998년 개정에 따라 도입되었음.

- 다만, 도입 당시 집중투표제는 정관으로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고, 제도 활성화를 위해 2009년 개정시(현행)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집중투표 청구요건을 완화(발행주식 총수 3/100 이상 → 1/100 이상)하는 현행 특례(제542조의7 제2항)를 규정하였으나, 종래 대부분의 회사가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해 온 바 있음.

- 한편, 법률 제21044호 개정법률(공포 2025. 9. 9., 시행 2026. 9. 10.) 제542조의7제3항은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주주들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집중투표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음.⁴⁾

- 개정안은 집중투표의 배제와 관련된 정관 변경시 3% 초과 보유 주주의 의결권 행사 제한 대상 회사의 범위를 대규모 상장회사에서 모든 상장회사로 확대하고 의결권 행사 제한 기준 비율인 3%를 하향 조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42조의7제3항).

3) 예를 들어, 2명의 이사를 동일한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 경우, 발행주식총수 10,000주 중 6,000주를 가진 주주 갑은 12,000개의 의결권이 있고, 4,000주를 가진 주주 을은 8,000개의 의결권이 있음. 이 때, 갑측 이사후보자는 A, B이고, 을측 이사후보자는 C인 경우, 갑은 A에 대하여 7,000개의 의결권을 행사하면 B에 대하여는 5,000개의 의결권 밖에 행사할 수 없는데, 을은 그의 의결권 8,000개를 전부 C에게 행사하면, 이사는 A와 C가 됨. 이에 반하여, 복수의 이사 선임을 순차적으로 하는 단순투표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과반수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원하는 이사가 선임되게 됨.

4) 「상법(2025. 9. 9. 법률 제2104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542조의7(집중투표에 관한 특례) ③ 제2항의 상장회사는 제382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할 수 없다.

투표를 배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제382조의2) 집중투표 배제 관련 정관 변경 의결시 3% 룰도 적용되지 않으므로(제542조의7제3항), 개정법률에 따라 집중투표제 배제가 금지된 대규모 상장회사와 달리 그 외의 상장회사는 집중투표와 관련하여 대주주의 영향력 차단 필요성이 여전히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입법 취지는 긍정적일 수 있음.

- 다만, 안 제542조의7제3항은 3% 룰 적용 대상 회사를 모든 상장회사로 확대하는 한편 행사 제한 기준 비율을 정관으로 하향하는 단서를 삭제하고 있는데, 이러한 단서는 경우에 따라 3% 룰 적용에 있어 대주주의 영향력을 보다 강력하게 차단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는 점⁵⁾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한편, 개정안 중 ①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할 수 없도록 하여, 2명 이상 이사 선임시 집중투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하려는 안 제542조의7제4항과 ② 대규모 상장회사가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감사위원회⁶⁾ 위원이 되는 이사를 최소 1명(정관에서 정하는 경우는 2명 이상)에서 최소 2명(정관에서 정하

5) 현행 제542조의7제3항 단서는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배제와 관련한 의결시 3% 룰을 적용하며, 그 행사 제한 기준 비율을 정관을 통해 하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예를 들어 정관으로 그 행사 제한 기준 비율을 2%로 정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언제나 2%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 경우에 따라 대주주의 영향력을 보다 강력하게 차단할 수 있게 됨.

6) 「상법」 제542조의11(감사위원회) ①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상법 시행령」 제37조(감사위원회) ① 법 제542조의11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를 말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는 경우는 3명 이상)으로 확대하려는 안 제542조의12제2항은 다음과 같이 법률 제21044호 개정법률(공포 2025. 9. 9., 시행 2026. 9. 10.) 제542조의7제3항 및 제542조의12제2항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심사 범위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 발의 당시 현행법	개 정 안	법률 제21044호 개정법률
제542조의7(집중투표 에 관한 특례) ① · ② (생략) ③ <u>제2항의 상장회 사가</u> 정관으로 집 중투표를 배제하거 나 그 배제된 정관 을 변경하려는 경 우에는 의결권 없 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 0분의 3을 초과하 는 수의 주식을 가 진 주주는 그 초과 하는 주식에 관하 여 의결권을 행사 하지 못한다. <u>다만,</u> <u>정관에서 이보다</u> <u>낮은 주식 보유비</u>	제542조의7(집중투표 에 관한 특례) ① · ② (좌동) ③ (생략)	제542조의7(집중투표 에 관한 특례) ① · ② (좌동) ③ <u>제2항의 상장회 사는 제382조의2제 1항에도 불구하고</u> <u>정관으로 집중투표</u> <u>를 배제할 수 없다.</u> <u><시행 2026. 9. 10.></u>

개정안 발의 당시 현행법	개 정 안	법률 제21044호 개정법률
<u>을을 정할 수 있다.</u> ④ 제2항의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제3항에 따른 집중투표 배제에 관한 정관 변경에 관한 의안을 상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항의 정관 변경에 관한 의안과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제542조의12(감사위원회 구성 등) ① (생략) ② 제542조의11제1항의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위원회위	④ -----상장회사는 제3항 및 제382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할 수 없다. 제542조의12(감사위원회 구성 등) ① (좌동) ② ----- ----- ----- ----- ----- ----- ----- -----	<삭 제> <시행 2026. 9. 10.> 제542조의12(감사위원회 구성 등) ① (좌동) ② 제542조의11제1항의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위원회위

개정안 발의 당시 현행법	개 정 안	법률 제21044호 개정법률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으며, 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한다)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u>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u>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으며, 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한다)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u>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u>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시행 2025. 7. 22.>

개정안 발의 당시 현행법	개 정 안	법률 제21044호 개정법률
사하지 못한다. ⑤ · ⑥ (생략) ⑦ 제4항은 상장회사가 감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 <u>준용한다. 이 경우 주주가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u> ⑧ (생략)		⑤ · ⑥ (개정안 발의 당시 현행법과 같음) ⑦ 제4항은 상장회사가 감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 <u>준용한다.</u> <u><시행 2025. 7. 22.></u> ⑧ (개정안 발의 당시 현행법과 같음)

문 의 처

02)6788-5055